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이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함)은 수탁자인 하나은행 (이하 “은행” 이라 함)과 신탁거래자인 위탁자 및 수익자(이하 “거래처”라 함)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수익자의 이익증식 등을 위하여 계약한 금전신탁(이하 “신탁”이라 함)거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 및 신탁상품별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하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금전신탁(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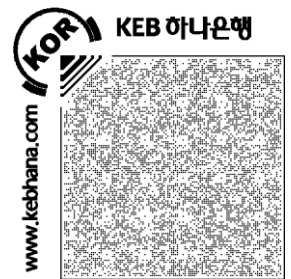


근로자퇴직적립신탁은 (제외함)거래에 신탁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합니다.

제 2 조 (신탁관계인) ① 이 약관에서 위탁자란 은행에 금전을 신탁한 자이며, 수탁자란 금전을 인수한 자, 즉 은행을 말합니다.

- ② 수익자란 원금 및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③ 제 ② 항의 수익자는 원금수익자와 이익수익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원금수익자인 동시에 이익수익자입니다.
- ④ 위탁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다만, 신탁상품별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수익자의 동의와 은행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위탁자 본인에 한하며 상속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실명 거래)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② 거래처는 은행이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 증표나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거래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 이라 함)에서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사전에 안내한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 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신, 통신기기" 라 함)을 통하여도 신탁금의 입금이나 지급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증서에 의한 거래) 거래처는 은행에서 교부한 증서(통장·전자통장 및 수익증권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통장입금 신청서에 의한 경우나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등의 약정에 의한 경우에는 증서 없이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인감 또는 서명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신탁거래에 사용할 거래처의 인감 또는 서명과 비밀번호 등은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입금)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이하 "수표"라 함)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의 수표를 제외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이하 "기타증권"이라 함)으로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을 발행하고 동 기타증권을 교환에 돌려 결제를 확인한 후 입금하며 증서는 수령증을 회수하고 발행하여 드립니다.
- ③ 제 1 항의 수표 및 제 1 항의 기타증권에 대하여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신탁성립시기) ①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입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에 신탁이 성립합니다.

1.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 송금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경우에는 신탁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



3. 수표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수표를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 ② 제①항 제 3 호에 불구하고 수표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하는 경우 대지급요건·보증요건 구비 등으로 결제될 것을 은행이 인정한 경우에는 신탁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 신탁이 성립합니다.

제 9 조 (수표의 부도) ①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입금한 수표가 지급 거절된 경우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신탁원장에서 뺀 후,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알려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지급 거절된 수표를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 청구하는 대로 돌려주기로 합니다.

제 10 조 (신탁금의 운용) ① 신탁금은 관계법령 및 신탁업감독규정과 은행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방법을 같이하는 다른 신탁금과 합동하여 운용합니다.



- ② 신탁금을 운용하여 취득한 신탁재산은 다시 이를 담보로 수익자를 위하여 차입 할 수 있으며, 차입금은 원 신탁금과 같은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 ③ 신탁재산 중 한국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은 은행이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가로써 이를 은행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합니다.

제 12 조 (이익배당) ① 신탁이익은 제 8 조에 따라 신탁이 성립한 날로부터 배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 약정한 방법과 배당률로 계산하여 배당합니다. 다만, 수표로 입금 한 경우에는 입금일부터 계산하여 배당합니다.

- ② 제①항의 배당률이 관계법령 및 신탁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3 조 (신탁보수) 신탁보수는 관련법령 또는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신탁거래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 중에서 취득합니다.

제 14 조 (조세 및 비용)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합니다.

제 15 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사전에 안내한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 1 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과 관련한 수수료는 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 16 조 (신탁금의 지급) ① 신탁금 또는 신탁이익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거래인감(또는 서명)으로 날인(또는 서명)한 소정의 지급청구서에 신고한 비밀번호 등을 적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전산통신기기·자동이체 등 별도약정에 의한 지급은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③ 신탁이 종료된 경우 은행은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습니다.
- ④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은행은 제 4 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⑥ 수익자가 은행으로부터 제 4 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3 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 (중도해지) ① 신탁기간 만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수익자 연서로써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신탁재산 중에서 금전신탁거래 개별약관에서 정한 중도해지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② 위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익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신탁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탁상품별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9 조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 하여야 합니다.

② 거래처가 인감(또는 서명)·비밀번호·성명·상호·
대표자·대리인·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은행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증서의 재발급) 제 19 조에 따라 증서·거래인감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에 은행은 거래처가본인임을
확인한 후 증서를 재발급합니다.

제 21 조 (오류처리 등) ①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원장이나 증서상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는 이를 정정 처리합니다.



제 22 조 (비밀보장) 은행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 23 조 (거래정보 제공)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신탁금 잔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은행은 명의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정보의 제공요청자를 본인으로 간주하여 입금인, 입금금액, 신탁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통지방법) ① 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된 연락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 은행이 제 1 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는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에 대한 통지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거래처가 19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 우송기간 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 25 조 (면책)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 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또는 서명)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위조·변조, 비밀번호의 누설이나 그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② 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누설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 3 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거래처가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19 조의 신고를 지연하여 발생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④ 제 1 항내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카드, 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거래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 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거래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 26 조 (약관변경 등) ① 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재·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 개월 전까지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거래처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약관을 은행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27 조 (약관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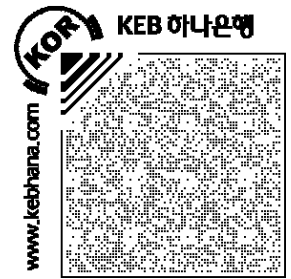
- ①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신탁상품별 약관 및 별도 약정에 정한 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신탁상품별 약관 및 별도약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이나 신탁상품별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 감독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28 조 (거래중지계좌 편입) 은행은 금전신탁거래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신탁내에서 거래중지계좌로 편입 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신탁금의 지급 및 중도해지의예외) ① 신탁금의 지급 또는 중도해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이 아닌 은행휴무일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신탁금 또는 신탁이익을 직전 영업일에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지급할 수 있다.

1. 신탁상품의 만기 (원본교부일)
2. 신탁상품의 중도해지수수료 면제개시일



- ② 제 1 항의 규정은 2002.6.30.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입금 건별로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하는 신탁상품의 경우는 2002.6.30. 이전 입금분에 한한다.

제2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